

2007. 4.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
-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
-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	2007.4.13	2007.4.13	2007.4.17	2007.4.17	공보담당관
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기획감사과장
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"
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	"	"	"	"	주민생활지원과장
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"	"	"	"	문화체육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시정 홍보를 위한 반회보를 「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규칙」을 근거로 발행하여 왔으나 규칙으로서는 운용상 미흡한 점이 있어 조례로 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

2) 주요내용

- 반회보의 명칭을 “월간예성”으로 함(안 제2조)
- 매월 1회 발행하되 필요 시 호외 발행(안 제3조)
- 반회보의 게재내용을 구체화 함(안 제7조)
- 편집위원회 구성운영(안 제8조 내지 제11조)
- 투고자 및 퀴즈응모자 등에게 원고료, 상품권 등 지급(안 제13조)

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 및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, 보육업무 등의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317명 (변동 없음)
- 집행기관 정원 : 1,298명 (변동없음)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
 - 본 청 : 551명 → 554명 (증 3명)
 - 읍면동 : 358명 → 355명 (감 3명)
- 한시적 운용 정원 존속기한 조정 (별표2)
 - 균형발전 전담인력 존속기한을 2007.6.30
⇒ 2008.6.30까지 연장(6급 1명, 7급 1명)
 - 기업도시 지원사업 인력 존속기한(2007.6.30) 삭제(9명)

다.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현재 시 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민원인이 시청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급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시장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(별표)
 - 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

라.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인자에게 지급(안 제3조)
- 지급 금액은 만 90세가 되는 날부터 월 3만원,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과 생일이 속한 달에는 10만원 추가지급

마.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2007년 7월 준공 예정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코자 함

2) 주요내용

- 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둠(안 제3조)
-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의 관람료 징수 및 감면규정을 둠(안 제4조 내지 제5조)
- 천문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운영규정을 둠(안 제7조 내지 제9조)
- 관람 및 이용의 제한, 시설장비의 파손 또는 훼손 시 변상책임 등 규정(안 제10조 내지 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「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규칙」 중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,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.
- 현 규칙과 달라지는 내용으로는
 - 안 제8조, 편집위원 수를 5명 증원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부분과
 - 안 제13조 제2항, 퀴즈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지급 범위(월 20명, 1인 3만원 이내)를 명확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

특히,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어 현 규칙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규정으로 조례로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상품권 지급이 가능해 지므로

시민들에게 반회보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고,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직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순증인원 없이 집행기관 내에서 인원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정원조정 내용은 읍면에서 3명을 감원하여 본청의 종합민원실에 1명, 주민생활지원과 1명, 사회복지과에 1명 등 3명을 충원하는 것으로

세부적인 중감사유를 살펴보면, 종합민원실은 북부지역 여권접수 지방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며

주민생활지원과는 4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경로연금 대상자, 모부자 가정, 차상위 계층 등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조사,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25개 읍면동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 증원이 불가피하고

사회복지과의 보육업무는 1명의 인력으로 122개소의 아동복지 시설과 820여명의 종사자를 관리하고 연간 14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바,

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고충을 해소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.

- 아쉬운 것은 주민수의 감소로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은 인원에서 감원해야 되는 읍면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,

이왕이면 2007년 1월 시행된 조직개편 결과를 재진단하여 실과간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하는 소견입니다.

- 한시적 운용 정원과 관련하여 균형발전 담당인력(2명)은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 6월말에 담당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며

기업도시지원사업 인력(9명)은 기업도시가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것으로

유의할 것은 사업추진정도에 따라 소요인력을 적의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.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에서 발급해 왔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 발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.
-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1~2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고 발급 건수가 연간 약 500건 정도이므로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였을 때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민원인에게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라.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”는 내용을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남은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“장수 노인”을 “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자”로 규정한 바, 「노인복지법」을 포함한 제 법령에 장수노인이 몇 세부터 인지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장수수당의 지급을 위해 시의 재정능력 및 수혜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정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안 제4조 제4호에 수당을 90세 이상은 월 3만원,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 지급하고 생일 달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,

장수수당 지급목적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이라 볼 때, 거동이 여의치 않은 100세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과도한 지원이라 사료되며,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수혜자의 범위를 좀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마.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2005년 추진하여 금년 7월 준공예정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검토결과, 과학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 충주시민에게 관람료의 50%를 감면토록 한 것은 지역주민들께는 반가운 일일 것이나 외지인으로부터는 불쾌감 내지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.

본 과학관이 인근의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테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료 및 감면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가.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

▶ 질의 : 편집위원 증원 이유는?

- 답변 : 사업소장까지 확대 참여토록 하기 위함

▶ 질의 : “충주시에 바란다”에 올라온 내용을 시정에 반영한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?

- 답변 : 보완하여 게재토록 하겠음

▶ 질의 : 조례제정의 근본적인 이유는?

○ 답변 : 공직선거법에 경품권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저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여권취급지방분소를 어디에 두게 되는가?

○ 답변 : 충주시와 옥천군에 두게 됨

▶ 질의 : 어느 읍면동에서 감원하는가?

○ 답변 : 주덕 1, 수안보 1, 노은 1명에서 감원할 계획임

다.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“없음”

라.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

▶ 질의 : 음력 생일에 생일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?

○ 답변 : 배려토록 하겠음

▶ 질의 : 85세로 낮추게 될 경우 추가되는 소요액은?

○ 답변 : 월 7천만원 정도임

마.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▶ 질의 : 과학관 운영방안은?

○ 답변 : 위탁 운영코자 함

▶ 질의 : 위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는가?

○ 답변 : 운영상황을 봐서 지원할 계획임

5. 심사결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.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| : 원안가결 |
|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: 원안가결 |
| 다.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: 원안가결 |
| 라.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| : 원안가결 |
| 마.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| : 원안가결 |

6. 붙 임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.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| 1부 |
| 나.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1부 |
| 다.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1부 |
| 라.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| 1부 |
| 마.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| 1부. 끝. |